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19. . . (제 회)	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성윤모 (산업통상자원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19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좁게 규정하고 있어,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,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신설하는 등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1호과목 중 “경우에는 법 제15조”를 “경우에는 재심사 청구 전에 법 제15조”로, “재심사를 청구한”을 “특허청장이 재심사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을 송달한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서목 및 어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서.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심사를 위해 이 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(미생물에 관계되는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제9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,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,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,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른 서열목록을 말한다)을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일 후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서류를 제

출한 날까지의 기간

어.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한
경우에는 심사청구일 후 8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국어번역
문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

부 칙

이 영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.

를 위해 이 영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(미생물에 관계되는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제9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미생물의 기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,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그 증명서류,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「특허법」 제54조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,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서열을 포함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는 형식에 따른 서열목록을 말한다)을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지

<신 설>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않은 경우에는 심사청구일
후 8개월이 되는 날의 다
음날부터 그 서류를 제출
한 날까지의 기간

어. 법 제8조의3제6항에 따라
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
을 정정한 경우에는 심사
청구일 후 8개월이 되는
날의 다음날부터 국어번역
문 오역정정서를 마지막으
로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	
연 락 처	(042) 481-5399